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행정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소방공무원 인사
총괄·조정 근거 마련 등>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47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소방공무원 인사 총괄·조정 근거 마련	3
2.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임용 후보자 역량평가 실시 근거 마련	1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채현일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5. 22.
3. 회부연월일 : 2026. 5.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으로 시·도지사에게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체를 위임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해 대통령과 소방청장은 인사권이 전혀 없고, 시·도별로 각각 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임·재위임된 소방의 인사권은 우수한 성과를 낸 지휘관이더라도 근무지역에 따라 고위직으로의 승진기회 자체를 제한하고, 우수 지휘관의 시·도간 인사 교류와 균형 있는 배치를 어렵게 하면서, 높은 소방서장 비위 발생을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이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

우라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 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방 고위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지역과 상관 없이 능력 있는 우수 지휘관을 고위직으로 선발 하고, 시·도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14조의3)

Ⅲ. 검토의견

1. 인사행정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소방공무원 인사 총괄·조정 근거 마련

개정안은 대통령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소방기관 간의 인사교류,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임용권자) ①·② (생략)	제6조(임용권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u>다만,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u>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소방공무원법」은 ①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② 소방정감·소방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③ 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에 대한 채용·승진·파견·강임·면직·해임·파면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④ 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은 소방청장이 임용권한을 가지고 있으며(이상 제6조제1항), 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조제2항).

한편, 현행법은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6조제3항). 구체적으로 ㉠ 소방청(소속 기관 포함)의 소방정·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임용권은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분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¹⁾한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영 제3조제1항).

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데(제6조제4항), 구체적으로 ㉢ 소방본부장과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시·도 소속

1) - 시·도 소방본부장의 임용권자는 다음과 같음.

- 소방정감, 소방감 : 대통령
 - 소방준감:
 - > 채용, 승진, 파견, 강임, 면직, 해임, 파면: 대통령
 - >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소방청장
 - 지방소방학교장의 임용권자는 다음과 같음
 - 소방준감:
 - > 채용, 승진, 파견, 강임, 면직, 해임, 파면: 대통령
 - >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소방청장
 - 소방정: 소방청장
- (자료: 소방청)

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에 대한 권한과 ㉔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영 제3조제5항)2).

2) 「소방공무원법」

제3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

제6조(임용권자) ①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②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시·도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분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3. 10., 2026. 6. 23.>

②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2014.11.19., 2017.7.26., 2018.5.31., 2020.3.10.>

③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9.17., 2014.11.19., 2017.7.26., 2018.5.31., 2020.3.10.>

④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특수구조대 안에서의 전보권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다시 위임한다. <신설 2019.1.15.>

⑤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3.10.>

<소방공무원 임용권자 등 현황>

직 급	임용권자	임용 제청권자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중앙 소속	시도 소속
소방총감	대통령	-	-	-
소방정감, 소방감	대통령	소방청장	-	-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정, 소방령	소방령 이상
채용, 승진, 파견, 강임, 면직, 해임, 파면	대통령 (준감인 본부장, 부분부장, 학교장 포함)	소방청장	소방청장 (소방정 학교장 포함)	시·도지사 (본부장, 부분부장, 학교장 제외)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소방청장 (본부장, 학교장 포함)	-	-	시·도지사 (본부장, 학교장 제외)
소방경 이하	소방청장	-	-	시·도지사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대통령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소방기관 간의 인사교류, 인력의

1.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3.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⑥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소방체험관 소속 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0., 2006.12.21., 2019.1.15., 2020.3.10., 2021.10.14.>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1., 2019.1.15., 2020.3.10.>

⑧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균형있는 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 이원체제에서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으나,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상당 부분을 계급과 임용행위의 종류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 이후 기대했던 지역 간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³⁾.

또한, 법률상으로는 소방청장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9조), 실제로는 시·도별로 승진 등의 인사가 진행되고 있어⁴⁾ 우수한 지휘관급 소방공무원(소방정·소방준감 계급의 소방서장 및 소방본부 과장급 이상 소방공무원을 의미함. 이하 같음)을 시·도별로 균형있게 배치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⁵⁾.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 각 시·도 단위로 정해지고 인사 역시 각 시·도 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⁶⁾, 서울, 부산, 경기 등 3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는 소방본부장을 제외한 소방본부 내

3)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2459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하고 있는가”, 2026. 1.11.

4)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이후 소방정(소방서장급) 이상 지휘관의 시·도 간 인사교류 실적은 전무함 (자료: 소방청, 기준일 2026. 7. 31.).

5) 한국정책학회, 책임성효율성을 담보한 소방조직 신모델 정책 연구, 2025.3.24., 212~213면.

6) -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고 있음.

-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각 ‘시·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최고 계급이 소방정(4급 상당)이어서, 지휘관급 소방공무원이 소방준감(3급 상당)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낸 지휘관급 소방공무원이더라도 근무지역에 따라 고위직으로의 승진기회가 달라짐으로써,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체계 확립과 전국 단위의 우수 지휘관 적재적소 배치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⁷⁾.

<각 시·도 소방본부별 최고 계급(소방본부장 제외)>

소방본부장을 제외한 최고 계급	해당 시·도
소방준감(3급 상당) (3개 시도)	서울, 부산, 경기
소방정(4급 상당) (13개 시도)	전남광주,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자료: 소방청, 2026. 7. 1.기준)

7) 2025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위원, 용혜인 위원, 이광희 위원, 이달희 위원 등이 지적하였음.

<소방정 이상 지휘관급 소방공무원 정원 현황>

상당 계급	소방 계급	보직	정원	
			중앙	시도
차관급	소방총감	소방청장	1	-
1급 상당	소방정감	-본청 차장, -서울·경기·부산·전남광주 소방본부장	5	-
2급 상당	소방감	-본청 국장, 소속기관장 -시도 소방본부장, 부분부장	18	-
3급 상당	소방준감	-본청 주요 과장 (운영지원과장, 상황실장, 대변인, 주무과장) -경기북부·제주·세종 본부장, 서울·경기 소방학교장	12	19
4급 상당	소방정	-본청 과장, 소방학교장 -본부 과장, 소방서장	36	376

(자료: 소방청, 2026. 7. 1.기준)

<시도별 소방정 및 소방준감 정원 현황>

구 분	중앙	서울	부산	경기	전남광주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전남	광주												
소방총감	1	사도 정원 없음																
소방정감	5																	
소방감	18																	
소방준감	12	5	3	10	-	-	-	-	-	-	-	-	-	-	-	-	1	-
소방정	36	33	18	49	30	12	19	21	11	12	6	27	20	24	22	31	31	10
계	72	38	21	59	30	12	19	21	11	12	6	27	20	24	22	31	32	10

※ 경상남도 정원에 창원 정원(소방준감 1, 소방정 3) 포함

(자료: 소방청, 2026. 7. 1.기준)

한편, 소방서장 등 소방정 직급의 경징계 처분 비율이 전체 소방 공무원에 비해 높고, 징계 처분 후에도 같은 보직을 유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1%로 나타나는 등 소방정 직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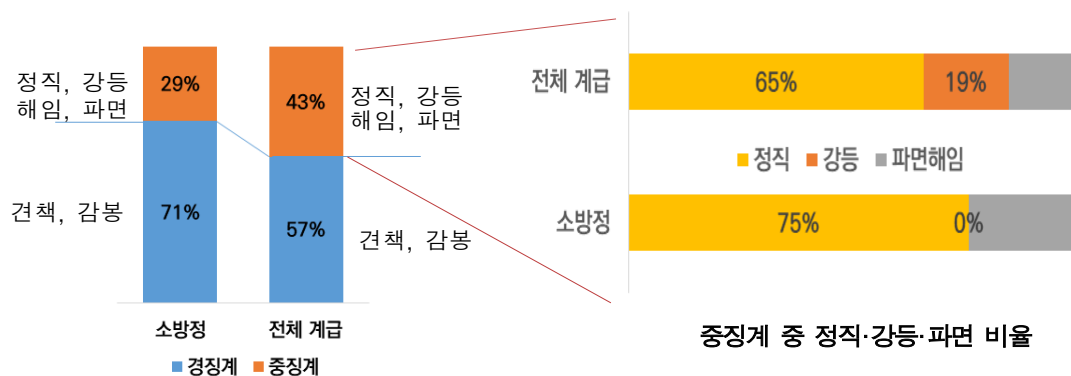
이와 같이 소방정의 비위에 대하여 온정주의적 처분이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소방정의 전보가 해당 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현행 인사제도를 지적하는 견해가 있음⁸⁾.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징계 관할>

계급	소방청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감 이상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소방준감		시·도 징계위원회
소방정(소방서장)	소방청 징계위원회	

(자료: 소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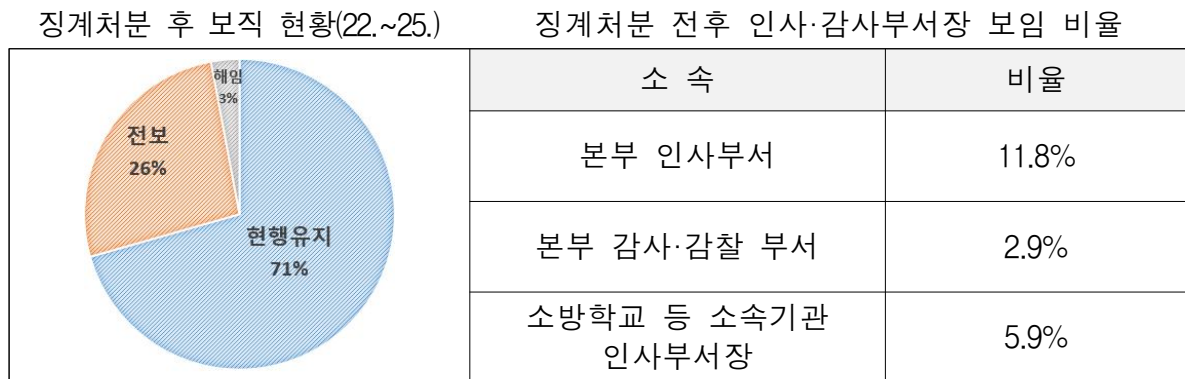
<소방정 징계처분 현황>



(자료: 소방청)

8) 경향신문, “소방서장 5명 중 1명은 비위 또는 범죄.....‘사각지대 속 외판섬’ 소방서”, 2024.5.18.

<소방정 징계처분 후 보직 현황>



(자료: 소방청)

이에,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더라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소방기관간의 인사교류,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근무 지역과 관계 없이 능력있는 지휘관급 소방공무원을 고위직으로 선발할 수 있고 시·도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첫째, 대통령의 소방공무원 인사 총괄·조정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은 대통령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필요한 때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는 개정안과 같은 입법적 조치가 없더라도 현행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도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임. 즉,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6조제3항) 현행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용권의 위임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임9).

그러나, 공무원 임용권 규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 9) 참고로, 현행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8항은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일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일부, 지방소방학교장에 관한 일부 임용권만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에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전반에 대한 직접 임용권 행사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을 개정하여야 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생략)

②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5. 10., 2003. 1. 20.,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2018. 5. 31., 2020. 3. 10.>

③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2. 3., 2013. 9. 17., 2014. 11. 19., 2017. 7. 26., 2018. 5. 31., 2020. 3. 10.>

④ (생략)

⑤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3. 10.>

1. (생략)

2.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3. (생략)

⑥ · ⑦ (생략)

⑧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적지만 해당 공무원에게는 승진·전보 등 근무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는 점에서 임용권자가 임용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임. 다만,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임용권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종류’나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범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소방청은 개정안은 단순히 위임된 시·도지사의 임용권한을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직접 행사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할 수 없거나 전국 단위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임용행위를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것이고, 대통령령만을 개정하여 대통령 등의 임용권 직접 행사 조항을 두는 경우 법률의 입법목적과 임용권 위임범위를 초과할 수 있고, 임용제도의 변화로 공무원의 근무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대통령 등의 직접 임용권 행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행 소방 인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우선 근거를 두고,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둘째, 개정안의 내용이 개정안의 취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은 ‘대통령’이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그런데, 현재 소방서장은 대부분 소방정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임용되고 있고 소방정의 전보권은 ‘소방청장’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6조제1항 단서)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임.

셋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공무원법」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이는 국가직 전환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행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¹⁰⁾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10) 각 시·도의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은 화재 등 재난현장의 지휘관으로서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하에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수용된 것으로 보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112179호,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2021. 11.)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의 임용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임용권자의 변경은 소방공무원의 인사권 행사 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과 근무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당사자인 소방공무원의 의견 역시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소방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일선 시·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 지휘체계 등 국가직화 정착 인식도 설문¹¹⁾을 실시한 결과, 응답

-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서장) ①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1) 한국정책학회, 책임성효율성을 담보한 소방조직 신모델 정책 연구, 2025.3.24., p80.

< 설문조사 개요 >

- 시기 / 방법 : '24.11.18. ~ 12.4. / 온라인 설문조사
- 인원 : 10,061명
- 내용 : 소방의 국가직화 정착 인식도, 지휘체계 등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 결과 : 중앙의 총괄·조정기능과 인사 운영 개선의 필요성에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변(긍정 부정 의견을 명확히 표현한 적극 답변자를 기준)

질문 요지	적극답변자 수	긍정답변 비율	부정답변 비율
우수 지휘관 유입 필요	7,326명	90.2%	9.8%
소방청장 임용권 확대 필요	6,732명	71.7%	28.3%
소방정 이상 중앙 임용권 행사	6,442명	75.2%	24.8%
소방준감 이상 중앙 임용권 행사	6,442명	72.4%	27.6%

자의 90% 이상이 우수지휘관 유입이 필요하고, 소방정·소방준감 이상의 임용권을 중앙에서 행사하거나 소방청장의 임용권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함¹²⁾.

12) 최근 각 소방 노조에서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표명함

-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법안 통과하는 날까지 총력을 다해 지원”(2026.5.27.)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 본부장 인터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일 발의....현장반응 “비리·비위에 대한 좋은 대응책”」 에브리뉴스(2026.5.22.)

2.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임용 후보자 역량평가 실시 근거 마련

개정안은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임용 시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3(소방준감으로의 승진임용 방법)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준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방준감으로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2006년에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하려는 공무원의 역량과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2010년부터는 과장직위로 승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도 도입하였음.

<역량평가 제도 개요>

-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3항(국장급 역량평가)¹³⁾,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과장급 역량평가)¹⁴⁾
- (도입배경)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자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적격자 임용을 지원하고자 도입

< 주요 연혁 >

- '06년 :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도입 (9개 역량, 6개 기법)
- '09년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체계 개편 (6개 역량, 4개 기법)
- '10년 :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시행 ('09년 시범운영 → '10.6월 임용령 개정)
- '15년 :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의무화 (6개 역량 4개 기법)
- '21년 :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체계 개편 (5개 역량, 3개 기법)
- '22년 : 역량평가 세종센터 개소

- **(평가 개요) 다수의 평가자가 실제 직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피평가자 행동 특성을 관찰, 평가**

구분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과장급후보자
평가 역량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	정책기획, 성과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평가 기법	1:1역할, 1:2역할, 서류함기법, 집단토론	1:1역할, 발표, 서류함기법
평가 운영	평가자 9명이 피평가자 6명 평가	평가자 6명이 피평가자 6명 평가
	평가역량 종합 평균이 2.5점 이상(5.0점 만점) 통과	

- **(사업예산) '26년 1,046백, 고공단(684백) / 과장급(362백)**

※ 최근 3년 간 사업비 : ('23) 1,096 → ('24) 1,008 → ('25) 998

(자료: 인사혁신처)

13)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2021.1.12.>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25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그러나, 2026년 현재 소방공무원은 지휘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인데, 지휘관의 역량 강화와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 고위직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대두되어 왔음¹⁵⁾).

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보좌기관(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하며, 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은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새롭게 신규채용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전보 또는 승진임용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7.3., 2023.12.26.>

1. 비서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관련 직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과장급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제1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과장급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평가대상 역량 항목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 항목 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⑤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2.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⑥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⑦ 인사혁신처장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정부적 역량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역량평가체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⑧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및 역량평가체계의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6.30.]

개정안은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임용 시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일반직 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 중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휘관급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이를 통해 소방 고위직후보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¹⁶⁾.

<국가공무원 역량평가 실시 현황>

구 분	소방	일반	세무	관세	경찰	교육
실시 직급	없음	과장급 이상	사무관 이상	서기관 이상	경찰서장	장학사
평가 방법	없음	실행과제 부여	전문+관리	실행과제 부여	내부심의	공개경쟁 시험
주요내용	없음	발표·서류합	상위 85% 합격	발표·서류합	직무수행능력	필기 외 위탁
관련근거	없음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	내부규정 운영	전자보직제도 도입 (전국최초)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자료: 소방청)

다만, 역량평가의 대상 계급은 해당 계급의 직무 특성, 다른 공무원 인사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15) 소방청 청렴 혁신위원회, 「소방청 청렴혁신」 추진계획(위원회 권고안), 2023. 1. 3., 7면.

16) 소방청은 역량평가는 평가자체로 능력 있는 지휘관을 선발하여 소방준감 이상 고위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외에, 교육과 평가 과정에서 동기유발과 경쟁을 통해 역량평가 대상인 소방청 지휘관의 역량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함.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소방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고위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 경무관 계급¹⁷⁾에 상당하는 소방준감은 시·도 소방본부장, 100만 이상 인구의 특례시 소방서장, 본청 총괄과장 직위 등을 수행¹⁸⁾하는 계급으로 시·도 또는 준 광역단위 소방업무를 총괄하거나 본청 국장을 보좌하여 국 단위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소방 고위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준해 소방준감 승진후보자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보직 등 인사운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개정안의 범문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의 보완이

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네.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제2조제1호하목

18)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별표 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역량평가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은 소방준감이라는 특정 계급으로의 승진 시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및 과장 직위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 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소방공무원도 향후 역량평가 대상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이에 향후 역량평가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평가 대상자의 범위 관련 법문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둘째, 소방준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¹⁹⁾가 소방준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어떤 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할 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소방준감은

19) 개정안은 역량평가의 주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표현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법 제6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중앙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자를 포함)가 구분되어 있고, 역량평가 결과를 승진·전보 등 임용과 임용제청에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역량평가의 주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소방청 소속인지 시·도 소속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계급으로서 동일한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준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대통령령에서 통일적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셋째,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역량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기간 및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행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임²⁰⁾.

문 의 처
02)6788-5351

20)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1., 2021. 1. 12.>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25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8조의5(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역량평가의 실시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11.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외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다만, 그 직무의 중요도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 9.>

②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평가하여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등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을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경력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중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으로 본다.